
2016년 예산편성 관련 주요경비

- 우리구에서 정한 기준경비
-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법정경비)
-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 기준경비

1. 우리구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구 분	산출기초
사무관리비(201-01)	
기본사무용품	15,000원×현원
복사용지	21,500원×상자수×12월
전산소모품	
- 레이저프린터 토너(드럼 포함)	흑백 : 165,000원×팀수×4회 칼라 : 200,340원×4색×4회
- 복사기토너(드럼 포함)	165,000원×1대×4회
- 모사전송기 토너(기타 소모품 포함)	154,000원×1대×4회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7,000원×현원×20식×12월(동 22식)
국내여비(201-02)	
기본업무추진 여비	20,000원×현원×15일×12월

※ 사무관리비는 경상적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3년간 집행실적**을 면밀히 파악하여 2015년 예산 수준 유지 및 감액 편성

■ 위원회 운영수당

- 경비성격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기 준 액 : **100,000원** 범위내 / 1회
 - ※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1회에 한함)
- 계상기준

참석수당	심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일 · 숙직수당 : 60,000원 이내 / 1일, 1야

■ 최저임금 단가

○ 최저임금액 (2016년)

업 종	시 간 급	비 고
모든산업	6,03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매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름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대 상 :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 편성방법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15년 1월 1일 기준)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5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예산편성 불가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부 문	기관명	인터넷 홈페이지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2.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법정경비)

인건비성 경비 : 봉급,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등

※ 20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379~418 Page 참조

실비보상 등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120%	설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 연가보상비	6월 30일 : 5일 12월31일 : 15일 이내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
● 직급보조비	월 650,000원	구청장
	월 500,000원	부구청장
	월 400,000원	국장
	월 250,000원	과장 및 동장, 일반임기제 나급
	월 155,000원	6급, 일반임기제 다급
	월 140,000원	7급, 일반임기제 라급
	월 105,000원	8. 9급, 일반임기제 마급

지방의회 관련 경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 의정활동비	월 9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200,000원	보조활동비
● 월정수당	월 2,695,000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여비	국내 교통비 20,000원 숙박비 46,000원 식비 25,000원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이나 출장 및 거리가 12km미만이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
	국외 년 2,000,000원	기준액의 25%범위 내 자율조정 가능

여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 국내여비	일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업무수행경비(관내) :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 편성 ◦ 관외출장여비(국내) : 총무과, 의회사무과 ◦ 공무원 교육여비 : 총무과 ※ 보조사업 등 특별사업 추진 여비는 해당부서
●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업무여비 : 총무과, 의회사무과 ◦ 국제화여비 : 총무과

3.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정한 기준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1인당 4,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범위내 증액편성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15년 기준)	의장 3,300천원 부의장 1,600천원 상임위원장 1,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행정부 기준액 범위내에서 시에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원 : 2,000천원×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액의 25%범위 내 자율조정 가능

업무추진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78,100천원 부구청장 56,100천원 국장, 보건소장 3,300천원 동장 6,600천원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에서 산식에 의해 결정 통보	◦ 기준액=초기기준액+정책사업결산 연동액×보정계수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본청, 구의회> 정원별 1인당 15천원 ~ 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

	<동주민센터, 보건소> 정원별 1인당 20천원 ~ 40천원		(2015. 10. 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액 - 본청, 구의회사무국 (단위:원) <table border="1"> <tr> <th>정원</th> <th>100명 까지</th> <th>101~ 300명</th> <th>301~ 600명</th> <th>601~ 800명</th> <th>801명 이상</th> </tr> <tr> <td>1인당 기준액</td> <td>80,000</td> <td>60,000</td> <td>45,000</td> <td>30,000</td> <td>15,00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 보건소 (단위:원) <table border="1"> <tr> <th>정원</th> <th>100명 까지</th> <th>101~ 400명</th> <th>401~ 1,000명</th> <th>1,000명 이상</th> </tr> <tr> <td>1인당 기준액</td> <td>40,000</td> <td>30,000</td> <td>25,000</td> <td>20,000</td> </tr> </table>	정원	100명 까지	101~ 300명	301~ 600명	601~ 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	60,000	45,000	30,000	15,000	정원	100명 까지	101~ 400명	401~ 1,000명	1,000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	30,000	25,000	20,000
정원	100명 까지	101~ 300명	301~ 600명	601~ 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	60,000	45,000	30,000	15,000																				
정원	100명 까지	101~ 400명	401~ 1,000명	1,000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	30,000	25,000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책급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과장 동장 의회전문위원 직장예비군중대장	650,000원 600,000원 350,000원 400,000원 100,000원 150,000원 100,000원 8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100,000원 250,000원 350,000원 5,000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기준액 : 정원수에 따라 편성 (2015. 10. 1. 기준) 																						

● **특정업무경비**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대민활동비	50,000원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80,000원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세무담당공무원	100,000원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예산담당공무원	150,000원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여론.동향전담공무원	100,000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6급이하)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60,000원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통.리.반장활동보상금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 반장수당 : 연 50,000원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기 준 액 : 1인당 평균 1,492천원
- ※ 해당 자치단체 '1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5년과 동일하게 편성

강사수당 지급기준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별표6)

○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특강 (I)	1시간당	100 이내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II)	최초1시간	40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	
	특강 (III)	최초1시간	3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	
	일반 (I)	최초1시간	23	◦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2	◦ 특강 및 일반강의2 이외의 강사
	일반 (II)	최초1시간	12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보조 강사	1시간당	4		
정보화·정보교육	정보화 (I)	최초1시간	15	◦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정보화 (II)	최초1시간	10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8 (5)	
	정보화 (III)	최초1시간	8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7 (5)	
사이버 정보화	교육기간내 1일당	2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보조 강사	1시간당	4		
개별·제한·분임교육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사이버 교육	교육기간내 1일당	2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일반지급기준 이외에 강사수당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준 준용